ISSUE PAPER

2018 01호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18 01호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후변화 완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1호 :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호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제3호 : 기후변화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뉴욕州 Reform the Energy Vision(REV) 개혁을 중심으로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ONTENTS

I. 서론
1. 파리협정 개관 02
2. 후속협상 배경 04

II.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위임사항
1. 감축 6
2. 투명성제도 10
3. 전 지구적 이행점검 11
4. 이행 · 준수 메커니즘 12

III. 후속협상의 전반적 동향
1. 2017년 11월 본 협상회의 14
2. 2018년 5월 본 협상회의 15

IV. 후속협상의 분야별 동향 및 주요 쟁점
1. 감축 관련 추가 지침 18
2.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 20
3.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요소의 출처 확인 및 방식 21
4. 이행 · 준수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식 · 절차 22

V. 후속협상에 대한 전반적 전망

참고문헌 32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 서론

I. 서 론

- 2011년 말에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결정에 따라 개시된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이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15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종료됨.
-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핵심 골격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 · 절차 ·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2016년에 개시되어 2018년 말 COP-24에서의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결과물은 COP 결정으로 채택될 예정이므로 당사국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파리협정 상의 당사국 약속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식 · 절차 · 지침 등으로서 당사국의 약속 이행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 본 이슈페이퍼는 파리협정 상의 당사국 의무 등 구체적 약속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협상을 위한 위임사항을 살펴 본 후,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의 중요 쟁점을 설명하고자 함. 다만 본 이슈페이퍼가 파리협정과 그 후속협상의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시간과 지면의 제한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므로 기후변화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 쟁점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는 감축과 관련된 '각국이 목표로 하는 국가결정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제출, '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제출 및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NDC의 특징, NDC 설명, NDC 국가등록부, NDC 조정과 갱신 그리고 '공통의 이행 기간'(common time frame)을 중심으로 설명한 후, 이와 연계된 투명성제도 · 전 지구적 이행점검 · 이행준수 메커니즘과 관련된 파리협정 및 후속협상을 감축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1. 파리협정 개관

1) AWG-DP 설치

-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남아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COP-17은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상반기에 개시하여, 가능한 한 조속하게 그리고 늦어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결정하고, 이 협상을 위하여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특별작업반」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을 설치하기로 결정함.[1)]

1) UNFCCC, Decision 1/CP.17, paras. 2-4,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eenth session, held in Durban from 28 November to 11 December 2011: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seventeenth session", FCCC/CP/2011/9/Add.1 (15 March 2012).

- 더반 당사국총회 결정은 ADP의 합의결과물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i) 기후변화협약 하의 의정서(protocol), (ii) 그 외의 법적 문서(legal instrument), 또는 (iii) 법적 효력(강제력)이 있는 합의결과(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가운데 하나의 형식으로 예정함.[2)]

2) 파리협정 협상 경과

- ADP는 2012년 5월 본 협상회의(ADP1-1)의 라운드테이블 논의로 시작되어 그 해 12월 도하에서 개최된 ADP1-2에서 작업계획을 수립함.[3)] 한편 ADP1-2와 함께 개최된 COP-18은 ADP가 협상문을 2015년 5월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COP-20)까지 협상문 초안을 위한 요소들을 논의할 것을 결정함.[4)]
- 2014년 리마에서 개최된 COP-20은 ADP 협상 결과물에 감축 · 적응 · 재정 · 기술개발 및 이전 · 능력형성 · 투명성을 균형적으로 다룰 것과 ADP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 강화를 결정함.[5)]

3) 파리협정 채택

-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UNFCCC 하의 파리협정 채택을 결정하고,[6)]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APA)을 설치하고,[7)] APA가 파리협정 발효 및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CMA) 개최를 준비할 것을 결정함.[8)]

---

2) *op.cit.* para. 1.
3) UNFCCC, Draft conclusions proposed by the Co-Chairs: Planning of Work, FCCC/ADP/2012/L.4 (7 December 2012) 참조.
4) UNFCCC, Decision 2/CP.18, para. 9,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eenth session, held in Doha from 26 November to 8 December 2012: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eighteenth session", FCCC/CP/2012/8/Add.1 (28 February 2013).
5) UNFCCC, Decision 1/CP.20, paras. 2, 6,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ieth session, held in Lima from 1 to 14 December 2014: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ieth session", FCCC/CP/2014/10/Add.1 (2 February 2015).
6) UNFCCC, Decision 1/CP.21, para. 1,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first session, held in Paris from 30 November to 12 December 2015: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irst session", FCCC/CP/2015/10/Add.1 (29 January 2016).
7) *op.cit.* para. 7.
8) *op.cit.* para. 9.

- 파리협정 채택을 위한 ADP 협상 과정에서 파리총회결과물(Paris Outcomes)을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 부속 합의 및 별도 문서로 구성할 것에 대하여 당사국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상이 진행 중인 요소들을 어디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음. 그 결과 핵심 요소들은 파리협정에, 부속적인 요소들은 COP 결정에, 그리고 NDC는 국가등록부에 포함되게 됨.

2. 후속협상 배경

-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규정들을 파리협정 또는 파리 COP 결정에 포함하는 것은 협상 시한의 제한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사국들은 핵심 요소를 파리협정에 포함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 절차 · 지침을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파리협정 및 파리 COP 결정에서 그 개발을 부속기구(APA, SBI, SBSTA)에 위임함.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후속 협상을 통하여 마련하는 방식은 마라케시 합의를 통해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마련한 것과 동일함. 마라케시 합의는 216페이지에 걸쳐 23개의 총회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9] 마라케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 후속 COP에서 결정되거나 당사국의 관행에 의하여 해결되었음.[10]

9) Farhana Yamin & Joanna Depledge,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 Guide to Rule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p.2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0) David Freestone & Charlotte Streck (ed), Legal Aspects of Implementing the Kyoto Protocol Mechanisms, p. 9,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II.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위임사항

II.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위임사항

-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핵심은 각 당사국이 감축 약속을 이행하여 동 협정 제2조 (a)호에 규정된 온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아래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요청되는 감축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추가 협상을 위한 위임사항을 설명함. 이와 함께 감축 NDC와 그 이행 · 달성 과정 등의 투명성, 온도 목표 등 파리협정 목적 달성 과정에 대한 전 지구적 점검 그리고 이행 ·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한 방식 · 절차 · 지침을 협상하기 위한 위임사항을 설명함.

1. 감축

1) INDC 제출

- 2013년에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COP-19는 INDC의 국내적 준비를 개시하고 강화할 것과 2015년에 개최될 예정인 COP-21 훨씬 이전에 그리고 준비된 국가는 2015년 1분기까지 이를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요청함.[11)]
- 2014년에 리마에서 개최된 COP-20은 앞의 바르샤바 총회결정을 반복하면서, 각국의 INDC가 자신의 현재 약속보다 진전되어야 함을 결정함.[12)]

2) NDC 제출 및 NDC 특징 추가 지침 개발의 위임

- 2015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파리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하는 시점까지는 NDC를 제출하도록 당사국들에게 요청하고, 파리협정 가입 이전에 INDC를 제출한 국가는 NDC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결정함.[13)] 다만 NDC 제출이 파리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님.
- 파리협정 제4조 2항은 각 당사국에게 달성하고자 하는 후속 NDC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ND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감축 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부과함.[14)] 따라서

11) UNFCCC, Decision 1/CP.19, para. 2(b),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nineteenth session, held in Warsaw from 11 to 23 November 2013: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nineteenth session", FCCC/CP/2013/10/Add.1 (31 January 2014).
12) UNFCCC, Decision 1/CP.20, *supra* note 5, paras. 9, 10, 13.
13)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22.
14) 파리협정 제4조 2항,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Parties shall pursue domestic mitigation measure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objectives of such contributions."

파리협정에 가입한 이후에는 NDC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임. AOSIS, AILAC, EU,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당사국들은 NDC를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 의무로 규정하기를 원했으나 미국,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인하여 NDC 제출만을 의무화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정함.[15]

- 위임사항: COP-21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NDC 특징에 관한 추가 지침의 개발을 APA에 요청함.[16] APA는 이를 감축 관련 의제인 'APA 의제 3'의 하나로 논의 중임.

3) NDC 제출주기 및 진전원칙

- 파리협정 제4조 9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5년 주기(cycle)로 파리 COP 결정(1/CP.21)과 CMA의 관련 결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NDC를 통보하여야 함.[17] 그리고 각 당사국의 후속 NDC는 그 당시의 NDC 보다 진전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의 상이한 사정에 비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능력을 반영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욕(ambition)을 반영해야 함.[18] 당사국의 NDC가 이전보다 진전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의욕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사국에 부과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당사국이 합의 당사국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정치적 의무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포함된 강한 '규범적 기대' (regulatory expectation)를 나타냄.[19]

4) NDC 관련 정보제공 의무 및 NDC 정보 추가 지침 개발의 위임

- 파리협정 제4조 8항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NDC를 통보할 때, 파리 COP 결정(1/CP.21)과 CMA의 관련 결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20] 이는 당사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당사국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15) Daniel Klein, Maria Pia Carazo, Meinhard Doelle, Jane Bulmer & Andrew Higham (e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p. 147,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16)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25.
17) 파리협정 제4조 9항, "Each Party shall communicate a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every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18) 파리협정 제4조 3항,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reflect its highest possible ambition, reflecting its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19) Daniel Klein, *supra* note 15, p. 148.
20) 파리협정 제4조 8항, "In communicating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ll Parties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in accordance with decision 1/CP.21 and any relevant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COP-21은 각국이 NDC를 통보할 때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출해야 할 정보로서 '기준년도를 포함한 참고년도', 이행 기간, 범위와 대상, 계획 과정,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과 흡수의 추산 및 설명 등을 위한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법, 자신의 NDC가 공평하고 의욕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자신의 NDC가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을 예시하고 있음.[21]
- 위임사항: COP-21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추가 지침 개발을 APA에 요청함.[22] APA는 이를 감축 관련 의제인 'APA 의제 3'의 하나로 논의 중임.

5) 공통의 이행 기간 및 추가 협상 위임

- 파리협정 제4조 10항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공통의 이행 기간'(common time frame)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채택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음.[23]
- 위임사항: 2016년에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CMA1-1은 이행주기에 대한 후속협상을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에 위임함.[24] SBI는 이를 'SBI 의제 5'로 논의 중인 바,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고취하고 NDC 강화에 용이한 5년 주기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개별 국가의 감축 전략이 단기간에 설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0년 주기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대립하고 있음.

6) NDC 등록 및 국가등록부 방식과 절차 개발의 위임

- 당사국들이 통보한 국가결정기여는 사무국이 관리하는 국가등록부(public registry)에 기록됨.[25]
- 위임사항: COP-21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국가등록부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방식과 절차의 개발을 SBI에 요청함.[26] SBI는 이를 'SBI 의제 6'으로 논의 중인 바, 일부 개도국들이 NDC 국가등록부와 적응보고 국가등록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무국이 운영 중인 현행 국가등록부를 최종적인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개도국 의견과 현재 협상 중인 NDC 정보지침을 반영하여보다 고도화된 기능을 포함하는 국가등록부를 개발하자는 선진국의 이견이 대립함.

---

21)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27.
22) *op.cit.* para. 28.
23) 파리협정 제4조 10항,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consider common time frames fo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t its first session."
24) UNFCCC,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n the first part of its first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15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one: Proceedings, para. 24(a), FCCC/PA/CMA/2016/3 (31 January 2017).
25) 파리협정 제4조 12항,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communicated by Parties shall be recorded in a public registry maintained by the secretariat."
26)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29.

7) NDC 조정 및 지침 초안 개발의 위임

- 당사국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욕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결정기여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음.[27]
- NDC 조정을 위한 지침 초안의 개발을 어느 기구에 위임할 것인지 그리고 작업일정을 어떻게 정할지를 '파리협정 이행 관련 추가 문제'를 논의하는 'APA 의제 8'에서 논의 중인 바, 감축 관련 추가 지침을 협상하는 'APA 의제 3'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등록부 운영 방식 및 절차를 협상하는 'SBI 의제 6'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일부 당사국이 현재 논의가 시기상조이므로 PAWP 협상 종료 후 논의될 수 있음을 주장함.[28]

8) NDC 설명 및 설명 지침 구체화의 위임

-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결정기여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국가결정기여에 상응하는 인위적 배출과 흡수를 설명할 때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환경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 증진하고 이중계산 방지를 보장하여야 함.[29]
- 위임사항: COP-21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협약 및 적절한 관련 법적 문서 하에서 수립된 접근법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NDC 설명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함. 이 지침은 (i) IPCC가 평가하고 CMA가 채택한 방법론과 지표에 부합하게 당사국이 인위적 배출과 흡수를 설명할 것을 보장하고, (ii) 당사국들이 NDC 통보와 이행 사이에 기준년도 등 방법론적 일관성을 보장하고, (iii) 당사국들이 모든 범주의 인위적 배출과 흡수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일단 배출원, 흡수원 또는 활동에 포함되면 지속적으로 이들을 포함할 것을 보장하고, (iv) 당사국들이 특정 범주의 인위적 배출과 흡수를 배제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보장하여야 함.[30] APA는 이를 감축 관련 의제인 'APA 의제 3'의 하나로 논의 중임.

---

27) 파리협정 제4조 11항, "A Party may at any time adjust its existing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with a view to enhancing its level of ambition,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28) UNFCCC, APA agenda item 8: Further matter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formal Note by the Co-Chairs: Final Iteration (14 November 2017@16:30 hrs), available at http://unfccc.int/files/meetings/bonn_nov_2017/in-session/application/pdf/apa_8_informal_note_.pdf.

29) 파리협정 제4조 13항, "Parties shall account for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 accounting for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movals corresponding to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arties shall promote environmental integrity, transparency, accuracy, completeness,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and ensure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accordance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0)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31.

2. 투명성제도

1) 투명성 프레임워크의 설립

- 파리협정은 상호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고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이한 능력을 고려하고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유연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동 및 지원에 대한 강화된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설립함.[31] 파리협정이 당사국 NDC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투명성 프레임워크가 당사국의 목표 이행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이 됨.[32]

2) 투명성 프레임워크의 목적

- 행동의 투명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제4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국가결정기여 및 모범적 관행 · 우선사항 · 필요와 부족 등 제7조에 따른 당사국들의 적응 행동의 명확성과 그 달성 과정의 추적을 포함한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제공하는 것과 제14조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33]
- 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후변화 행동의 맥락에서 관련 개별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제14조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총 재정지원액의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는 것임.[34]

31) 파리협정 제13조 1항, "In order to buil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and to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an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with built-in flexibility which takes into account Parties' different capacities and builds upon collective experience is hereby established."

32) Daniel Bodansky, Jutta Brunnée & Lavanya Rajamani,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p. 242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33) 파리협정 제13조 5항,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action i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ction in the light of th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s set out in its Article 2, including clarity and tracking of progress towards achieving Parties' individua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Article 4, and Parties' adaptation actions under Article 7, including good practices, priorities, needs and gaps,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34) 파리협정 제13조 6항,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for transparency of support is to provide clarity on support provided and received by relevant individual Parti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ctions under Articles 4, 7, 9, 10 and 11, and, to the extent possible, to provide a full overview of aggregate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inform the global stocktake under Article 14."

3)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 채택의 위임

- 파리협정 제13조 13항은 CMA가 제1차 회기에서 협약 하의 투명성 관련 제도로부터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동 협정의 투명성 조항(제13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행동과 지원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을 채택할 것을 규정함.[35]
- COP-21은 COP-24가 검 토한 후 제1차 CMA로 이관할 수 있도록, 앞의 제13조 13항에 규정된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할 것과 이를 처음 검토할 연도 및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를 후속 검토하고 갱신할 연도를 확정할 것을 APA에 요청함.[36]

3. 전 지구적 이행점검

1)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시행

- 파리협정은 CMA가 동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규정함. 이는 완화, 적응 및 이행 수단과 지원 수단을 고려하면서, 형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비추어 포괄적이고 촉진적인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함.[37] CMA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2023년에 첫 번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 5년마다 이를 실시함.[38]

2) 투입요소의 출처 확인의 위임

- 파리 COP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요소의 출처를 찾아 확인하여, 제1차 CMA가 검토한 후 채택할 수 있는 권고안을 COP가 작성할 수 있도록 COP에 보고할 것을 APA에 요청함. 투입요소는 (i) 당사국들이 통보한 NDC의 전체적 영향, 파리협정 제7조 10항 11항 통보의 적응 노력 · 지원 · 경험 · 우선사항의 상태,

35) 파리협정 제13조 13항,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at its first session, building on experience from the arrangements related to transparency under the Convention, and elaborating on the provisions in this Article, adopt common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as appropriate, for the transparency of action and support."

36)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91.

37) 파리협정 제14조 1항,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periodically take stock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o assess the collective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its long-term goals (referred to as the "global stocktake"). It shall do so in a comprehensive and facilitative manner, considering mitigation, adaptation and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support, and in the light of equity and the best available science."

38) 파리협정 제14조 2항,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undertake its first global stocktake in 2023 and every five years thereafter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지원의 조성과 제공에 대한 정보, (ii) IPCC의 가장 최근 보고서, (iii) 부속기구의 보고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39]

3) 전 지구적 이행점검 방식 개발의 위임

- 파리 COP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방식을 개발하여, 제1차 CMA가 검토한 후 채택할 수 있는 권고안을 COP가 작성할 수 있도록 COP에 보고할 것을 APA에 요청함.[40]

4. 이행 · 준수 메커니즘

1) 이행 · 준수 메커니즘 설치

- 파리협정 제15조 1항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치 하였으며,[41] 이 조 제2항은 이 메커니즘이 전문성에 기초한 촉진적 성격의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그 위원회는 투명하며 비대립적이며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기능할 것 그리고 당사국들 각각의 능력과 사정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였고,[42] 이 조 제3항은 위원회가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것을 규정함.[43]

2)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절차 개발의 위임

- COP-21은 제1차 CMA가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를 개발할 것을 APA에 요청함.[44]

---

39)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99.
40) *op.cit.* para. 101.
41) 파리협정 제15조 1항, "A mechanism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and promot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s hereby established."
42) 파리협정 제15조 2항,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consist of a committee that shall be expert-based and facilitative in nature and function in a manner that is transparent, non-adversarial and non-punitive. The committee sha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spective national capabilities and circumstances of Parties."
43) 파리협정 제15조 3항, "The committee shall operate under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t its first session and report annuall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44) UNFCCC, Decision 1/CP.21, *supra* note 6, para. 103.

Ⅲ. 후속협상의 전반적 동향

III. 후속협상의 전반적 동향

1. 2017년 11월 본 협상회의

- 2016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CMA 1-1은 '파리협정 하의 작업 프로그램' 협상을 강화하여 2018년까지 회기에 그 결과물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함.[45] 이에 따라 같은 기간에 개최된 -22는 PAWP 협상을 가능한 조속하게 종료하여 늦어도 2018년에 개최되는 CMA1-3 회기에 그 결과물의 이전을 결정함.[46]
- 2017년에는 제안서, 워크숍, 전문가 보고서 및 회기 전 논의를 통하여 당사국들에 의한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당사국들의 협상 중 발언의 결과 일련의 비공식기록이 작성되어 내용의 반복적 축적이 지속됨. 그 결과 광범위한 개념적 논쟁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논의와 실체적 요소의 구체화가 가능했으며, 비공식기록의 골격과 윤곽이 안정화되고 내용이 풍부해짐. 따라서 당사국들이 식별한 핵심 옵션과 중요한 연계가 APA 작업 전반에 걸쳐 명확해져서 2018년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47]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본 협상회의 이후 APA 공동의장은 다루어야 할 주제의 광범위함과 복잡함을 고려하면 작업 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가속해야 할 것으로 평가함. 따라서 공동의장은 식별된 실체적 요소들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로 서술된 문안으로 변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작업임을 강조함.[48]
- 2017년 본에서 개최된 COP-23은 COP-24까지 후속협상을 종료하고, 그 결과물을 COP-24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CMA1-3에 이전하기로 한 지난 결정을 확인하고 부속기구 등에 협상 진행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함.[49] 제1차 CMA에서는 필수적인 것만 채택한 후 추후 이를 발전시키자는 의견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일시에 채택하자는 의견의 대립은 추후 협상 진행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45) UNFCCC, Decisions 1/CMA.1, para. 4,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n the first part of its first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15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CCC/PA/CMA/2016/3/Add.1 (31 January 2017).

46) UNFCCC, Decision 1/CP.22, para. 12,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second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7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second session", FCCC/CP/2016/10/Add.1 (31 January 2017).

47) UNFCCC, Reflections note on the forth part of the first sess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Note by the Co-Chairs, APA.2018.1 Informal Note, para. 3 (10 April 2018).

48) *op.cit.* para. 4.

49) UNFCCC, Decision 1/CP.23, paras. 2, 4,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third session, held in Bonn from 6 to 18 November 2017: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third session", FCCC/CP/2017/11/Add.1 (8 February 2018).

2. 2018년 5월 본 협상회의

- 2018년 5월 회기의 중요한 작업 목표는 APA 공동의장이 시급함을 강조한 협상문의 기초를 만드는 것, 즉 비공식기록에 포함된 실체적 요소들을 완전한 문장형태의 서술로 변환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의제에서 동 작업을 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완전한 문장화를 개시하지 못함.
- 2018년 5월 회기와 관련하여 이집트는 개도국을 재정 조성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예로 들면서 후속협상의 모든 의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균형과 비교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이는 재정 관련 협상의 진전 상황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서 5월 회기에서 재정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경우 개도국이 다른 의제의 진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암시한 것으로 판단됨.[50] 이에 따라 APA 폐막총회 결론문은 협상의 모든 의제가 모순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진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51]
- 협상 종료 시에 APA는 파리협정을 완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완성도와 상세함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의제에 걸쳐 작업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52] 2018년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기 협상회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에게 이번 회기 결과물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안 및 당사국들이 협상의 기초에 합의할 수 있는 추가적 과정을 포함하여 기존 비공식기록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한 제안문을 8월 1일까지 준비하도록 요청함.[53]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개별 의제별 완성도와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간소화로 인하여 중요한 개념이나 문장 서술이 삽입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것이 요구됨.[54]

50) Third World Network, Call for balanced and comparable progress on all elements of the Paris Work Programme, TWN Bonn News Update 2, 1 May 2018, pp. 1-2.
51) UNFCCC, Draft conclusions proposed by the Co-Chairs: Agenda items 3-8, FCCC/APA/2018/L.2, para. 4 (10 May 2018)
52) *op.cit.* para. 3.
53) *op.cit.* para. 6.
54) *Ibid.*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Ⅳ. 후속협상의 분야별 동향 및 주요 쟁점

Ⅳ. 후속협상의 분야별 동향 및 주요 쟁점

1. 감축 관련 추가 지침

1) 협상 동향

- 2017년 11월에 본에서 개최된 협상회의에서 공동진행자가 작성한 비공식기록은 NDC 특성, NDC와 함께 제출할 정보, NDC 설명 지침 등 세 하위분야에 대한 협상 진전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이 비공식기록은 특징 · 정보 · 설명에 대한 일반 섹션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및 설명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실체적 요소에 대한 제안을 모두 포함함.[55]
- 2017년 11월의 논의 과정에서 NDC의 범위, NDC 특징 · 정보 · 설명 지침에서 차별화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상이한 입장을 가진 점이 분명해 짐. 당사국들의 이견으로 인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형태의 구조와 일련의 실체적 요소들이 제안되었고 이들이 계속하여 전체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놓이게 됨. 그 결과 비공식기록이 방향을 찾거나 협상의 기초로 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상이한 견해를 포함한 180 페이지의 매우 긴 형태가 됨.[56]
-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본에서 개최된 협상회의에서 당사국들은 NDC 특징에 관하여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바, 중국은 LMDC를 대표하여 NDC 특징은 기존의 것으로 충분하며, 이는 개별 국가의 능력과 사정에 비춘CBDR-RC를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함. 한편 마샬 아일랜드는 AOSIS를 대표하여 지침이 배출 감축 노력의 계량화 가능성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의욕 반영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함. 그리고 유럽연합은 추가적 지침의 유용성을 강조하였으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파리협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NDC의 계량화 가능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특징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2023년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 이후에 개최되는 제1차 CMA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함.[57]

2) 주요 쟁점

- NDC의 특징에 관하여 (i) 기존 특징에 대하여 파리협정의 각 규정에 나타난 관련 특징을 언급하는 방법, 당사국에 의한 결정 · 최빈개도국 등에 대한 유연성 부여 등을 언급하는 방법 또는 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ii) 새로운 추가적 특성으로 개도국을 위한 수량화된 지원 평가, 지급 또는 약속된 수량화된 지원, 저탄소 장기 개발전략, 지원 없는 배출감축능력의 조건 · 상황, 모든 중요한 배출 분야 및

55) UNFCCC, *supra* note 47, para. 14.
56) *op.cit.* para. 15.
57) Third World Network, Parties express divergent views on ‘features’ of NDCs, TWN Bonn News Update 15, 17 May 2018, pp. 1-3.

가스 대상, 진정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에 기초 등을 언급하는 방법과 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 (iii) 특징의 지침 또는 구체화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량으로 노력을 수량화 가능, 진전,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욕, 대상 · 배출원 · 흡수원, 통보에 관한 시간표, 목표 연도, 모든 중요한 가정의 개요, 경제 전반에 대한 절대적 배출 감축 목표 · 경제 전반에 대한 배출 감축 또는 제한 목표 등 NDC 특성에 대한 서술, 시간 경과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배출 제한 또는 감축 목표로의 이동 등을 언급하는 방법과 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음.[58] NDC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은 NDC의 추가적 특징과 이에 대한 지침 또는 구체화에 적극적인 반면,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추가 특징 또는 구체화에 반대하는 입장임.

- NDC의 명확성 · 투명성 ·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와 관련하여, (i) 추가지침의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4조 8항의 이행촉진, NDC의 명확성 · 투명성 강화 및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NDC 준비 및 제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또는 참고, 기후행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강화와 당사국 사이의 신뢰 제고, 과정 추적의 촉진, NDC 총량계산의 촉진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촉진 등의 요소가 제기되었으며, (ii) 개도국의 능력과 관련하여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의 점진적 정보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의 요소가 논의되었고, (iii) 절차와 관련하여 NDC를 통보할 때 이에 부속하는 방법 등이 주장되었음.[59] 그 외에 NDC 범위와 대상에 대한 정보, 공정성 및 의욕에 대한 정보, 가정과 방법론적 접근법에 대한 정보, NDC 목표에 관한 추가 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요소가 제기되고 있음.[60]
- NDC 설명을 위한 추가지침과 관련하여 (i) 설명의 의의를 파리협정 제4조 13항에 규정된 절차, 당사국 사이의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투명성 증진, NDC 이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공통의 수단 등으로 포함하자는 의견과 이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ii) 설명의 목적으로 파리협정 제4조 13항의 원칙이 NDC 이행과 달성에 대한 보고와 그 과정의 추적을 통하여 이행됨을 보장, 환경건전성 · 투명성 · 정확성 · 완전성 · 비교가능성 · 일관성의 증진과 보장, 당사국 사이의 상호 신뢰 증진 및 일반 대중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무엇을 할지에 관한 분명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인 설명 제공 등의 요소를 포함하자는 주장과 이를 포함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그 외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하의 접근법에 기초하는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음.[61]

58) UNFCCC, APA agenda item 3 – Further guidance in relation to the mitigation section of decision 1/CP.21, on: • features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6, • information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8; and • accounting for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31,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 – Navigation tool to supplement the informal note of APA 1-4 by the co-facilitators, pp. 3-5 (8 May 2018).
59) *op.cit.* pp. 6-7.
60) *op.cit.* pp. 9-14.
61) *op.cit.* pp. 20-24.

2.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

1) 협상 동향

- 2017년 11월 본 협상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제안을 기초로 마련된 비공식기록을 통하여 투명성 프레임워크의 방식 · 절차 · 지침에 포함될 중요 요소들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진행하여야 할 작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함을 알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추가적 요소를 파악하고 당사국이 공유하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분야를 파악하고 서술한 완전한 문장형태의 텍스트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파악됨.[62]
- 2017년 11월 협상회의 결과 (i) 당사국들의 의도가 오류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고, 유사한 견해를 간결화 하여 필요한 옵션들을 개발하는 작업, (ii) 투명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파리협정 제13조 7항부터 9항에 이르는 다양한 규정("shall" 과 "should"의 사용)들의 법적 성격이 방식 · 절차 · 지침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 (iii) 개도국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례를 논의하는 작업, (iv) 투명성 프레임워크의 방식 · 절차 · 지침 관련된 어떤 제안 내용이 다른 의제 등에서 논의되는 사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를 어떻게 방식 · 절차 · 지침에서 다룰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는 작업, (v) 앞의 작업 결과를 협상의 기초가 될 문서에 일관성 있게 포함하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됨.[63]

2) 주요 쟁점

- 투명성을 위한 공통의 방식 · 절차 ·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 관련 비공식기록이 68쪽에 이를 정도로 논의되는 쟁점과 요소가 광범위 함. 투명성 프레임워크 방식 · 절차 · 지침의 목적에 대하여 당사국 NDC의 명확성과 그 달성 과정 추적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행동에 대한 분명한 이행 제공, 제출된 정보가 파리협정의 목적 달성을 향한 전체적 진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총량 계산이 가능도록 보장, 행동 · 과정 · 달성의 입증 촉진, 전문가 검토 과정의 촉진, 제15조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요구되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함 등 다양한 요소가 제기되고 있음.[64]
- 프레임워크 방식 · 절차 · 지침의 원칙에 대하여 보고되는 정보의 질 · 대상 · 범위 · 상세한 수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지속적인 향상 촉진, 협약 하의 기존 제도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강화하여야 함, 당사국 사이의 상이한 출발점 및 보고 주기 고려,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부여, 중복 회피, 투명성 · 정확성 · 완전성 · 일관성 ·

62) UNFCCC, *supra* note 47, paras. 24-25.
63) *op.cit.* para. 27.
64) UNFCCC, Draft elements for APA agenda item 5: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final iteration (9 May 2018). p. 2.

비교가능성의 증진 등의 요소가 논의되고 있음.[65]

- 프레임워크 방식 · 절차 · 지침의 구조에 대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이를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을 내포하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공통의 지침, 일정한 경과 기간 도과 후에 완전히 이행되는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공통의 지침, 기후변화협약 하의 기존 제도를 기초로 하는 개도국과 선진국에 이원화된 제도 등 상이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66]

3.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요소의 출처 확인 및 방식

1) 협상 동향

- 2017년 11월 본 협상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세 가지의 포괄적 활동 모델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i) 협상의 기초를 구축할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에 부합하는 문안을 준비하고, (ii) 기존 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평에 대한 요소를 개발하여야 하며, (iii) 당사국 입장의 공통점을 찾아 적절하게 통합하고, (iv) 당사국 사이의 이견을 분명하게 하여 이를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만드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67]

2) 주요 쟁점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방식과 관련하여 이행점검의 주체에 대하여 CMA, CMA가 설치하는 부속기구인 '전문가로 구성된 대화체'(structured expert dialogue: SED), SBI와 SBSTA, SBI와 SBSTA의 지휘 하에 있는 전문기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국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기간을 주장하는 의견과 6개월에서 1년 사이 · 적어도 1년 ·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준비단계 · 기술적 단계 · 정치적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유력시 되고 있음.[68]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방식에서 첫 단계로 논의되는 준비단계는 정보를 취합하여 축적하는 단계로서, (i)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2020년에 개시되고 매 5년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2021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한 후 매 5년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하는 해의 부속기구 회기 전후에 시작하여야

65) *op.cit.* pp.2-3.
66) *op.cit.* p. 3.
67) UNFCCC, *supra* note 47, paras. 28-29.
68) UNFCCC, Draft elements for APA agenda item 6: Matters relating to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Paris Agreement: a)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input for the global stocktake, b) Development of the modalities of the global stocktake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 – final iteration (8 May 2018), pp. 2-4.

한다는 주장, 2023년에 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료로부터 6개월 이전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 등이 있으며, (ii) 정보의 출처와 관련하여 당사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부터 당사국 뿐 아니라 파리협정을 위해 기능하는 기구 · 포럼 · 제도, UN 기관, IPCC, 과학 관련 기구, 지역 그룹,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음.[69]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방식에서 논의되는 두 번째 단계는 투입된 정보의 검토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축적하고 집단적 과정을 평가한 후 결과물을 준비하는 기술적 단계로서, 이와 관련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실시되는 해에 SB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그 직전 해에 SB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실시되는 해에 CMA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시행되는 CMA 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이전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 한편 기술적 단계의 결과물에 대하여도 보고서가 권고 없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 기술적 조언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있음.[70]
-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방식의 세 번째 단계인 정치적 단계에 대하여 (i)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CMA 초기에 개시되어 전 회기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CMA 폐막총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CMA 폐막총회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대립되어 있으며, (ii) 구조와 관련하여 각료급 대화가 이루어지는 고위급 대화 또는 라운드테이블, 총회 의장의 성명서, 총회 의장의 보고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iii) 최종 결과물에 격차의 확인, 가능한 조치, 행동 강화를 위한 모범적 관행 등을 포함할지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 일반적 정책 권고안, 총회가 채택하는 결정, 모든 당사국이 합의하고 총회가 채택한 공식적 선언, 총회 의장의 최종 성명서의 포함이 논의되고 있음.[71]

4. 이행 · 준수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식 · 절차

1) 협상 동향

- 2017년 11월 본 협상회의에서 라운드테이블논의 1회, 비공식협상회의 6회 개최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회기 비공식기록을 갱신하였으며, 2018년 4월 30일부터 개최되는 부속기구회의 기간에 진행될 APA 1-5 회기는 갱신된 비공식기록을 바탕으로 협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임.
- 2017년 11월 회기에서 갱신된 비공식기록은 총 14쪽으로, 위원회의 방식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당사국들이 주장한 요소들을 열거하고 동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등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부연하고 있음.

69) *op.cit.* pp. 3-5.
70) *op.cit.* p. 8.
71) *op.cit.* pp. 9-10.

- 2017년 11월 회기에서 당사국 제안서와 발언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방식, 대상범위 및 앞으로의 협상진행 등에 대한 당사국들의 구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절차개시요건, 결과물 종류, CBDR 또는 NCC 반영 방법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재정 등 지원메커니즘과의 연계에 대한 선 · 개도국 대립이 두드러짐.
- 2018년 5월 본 협상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작업방식에 대하여 비공식문서에 포함된 요소들 가운데 중복된 요소들을 제거 · 통합하고 위원회의 조직에 대하여 논의하며 비공식문서의 요소들을 협상의 기초가 되는 문장으로 서술된 형태로 변환하기로 함. 동 회의 기간 중 6회의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2018년 5월회기 중 6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조직(institutional arrangement), 절차개시(initiation), 범위(scope), 절차(procedures) 그리고 조치(measures)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이 번 회기의 목적이었던 설명형식의 문장으로 된 문서 도출에 이르지 못함.
- 2018년 5월 회기의 논의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쟁점과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이 명백해지고, 당사국들의 추가적 의견 제시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설명형 문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의제와 협상 속도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주요 쟁점

- 개별 당사국 능력과 사정의 고려: 이를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개도국은 위원회 활동의 핵심적 원칙이며 위원회의 모든 절차에서 국가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국가별 차별화는 파리협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이행준수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별 특수성과 유연성이 사안별로 고려될 수 있을 뿐임을 주장함. 한편 이 원칙을 위원회 절차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방식과 절차에 포함된 위원회에 대한 지침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사안별(case-by-case)로 적용할 것을 주장함.[72]
- 다른 제도와의 연계: 파리협정의 다른 제도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이행준수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와 다른 제도 간의 연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진국들은 투명성제도(제13조), 전 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 시장 메커니즘(제6조)과 강한 연계가 있음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개도국은 주로 대응조치포럼, 상설재정위원회, 기술집행위원회,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 등과의 연계를 주장함. 특히 투명성제도와의 연계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투명성제도의 전문가검토(TER)가 이행 · 준수 위원회 작업의 개시요건 및 배경정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들은 투명성제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거나 연계가 불가함을 주장하였으며, 다만 일부 개도국이 투명성제도 결과물이 위원회 작업의 개시요건이 될 수 없으나 위원회

72) UNFCCC, Draft elements of APA agenda item 7: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mittee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and promote compliance referred to in Article 15.2 of the Paris Agreement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Final iteration, p. 2 (8 May 2018).

작업의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동의함. 한편 지원제도와의 연계에 대하여 개도국들은 강한 연계를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지원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및 의무 이행 주체가 개별 국가가 아님을 이유로 연계에 반대함.[73]

- 위원회의 재량: 일부 개도국들은 주로 위원회에 대하여 방식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위임사항을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이를 CMA가 결정할 문제로 여기는 이견이 존재함. 한편 일부 개도국은 예를 들어 모든 단계의 과정이 위원회의 활동 개시방법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위원회의 활동과 과정을 방식과 절차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절차 규칙에 관한 상당 부분을 일정한 제한 하에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74]
- 제1차 CMA에서 채택할 수준: 대다수 개도국은 제1차 CMA에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방식과 절차의 채택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일부 문제는 제1차 CMA 이후 적절한 때 채택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함.[75]
- 원칙 규정의 필요성: 개도국은 주로 위원회의 지침이 되는 원칙에 대한 규정이 방식과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 개별국가의 상이한 상황에 비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국가의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투명성, 보충성, 독립성, 부가가치의 필요성, 다른 제도와의 중복 회피가 원칙으로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위원회의 지침이 되는 원칙이 파리협정 제15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절차에서 유연하게 사안별로 반영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임.[76]
- 위원회 기능: 다양한 국가들이 이행촉진과 준수증진을 별개의 구별되는 기능으로 파악하고 다만 상호 보완적이며 배타적이지 않다고 파악하는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이들이 하나의 연속체이며 다만 문제가 되는 규정의 법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행촉진과 준수증진이 가능하고 구속력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행촉진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한편 일부 당사국들은 하나의 기능만이 있으므로 위원회 결과물에 있어 조언적이며 비구속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주장함.[77]
- 위원회 범위: 당사국들은 위원회의 대상 범위에 대하여 모든 파리협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 기능에 비추어 범위를 정할 것, 구체적 규정에 따라 정할 것, 절차 개시 측면에서 정할 것 등 다양한 주장을 개진함. 선진국들은 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개도국들은 포괄적 규정을 선호함. 구체적 규정에 따른 구별에 있어서도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의 구체적 의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shall"을 포함하는 모든 규정, 당사국의 개별적 의무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 등 다양한 옵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78]

---

73) *Ibid.*
74) *Ibid.*
75) *Ibid.*
76) *op.cit.* pp. 2-3.
77) *op.cit.* p. 4.
78) *op.cit*. pp. 8-9.

- 위원회 절차개시 신청자: 이행 또는 준수에 문제가 있는 당사국 스스로 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당사국에 대해 위원회의 모든 절차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당사국들 사이에 이견이 없음. 다만 LMDC 등 대다수의 개도국은 관련 당사국만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ILAC과 AOSIS 및 선진국들은 추가적인 신청자 인정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NDC 등록부의 정보, 투명성제도 하의 통보에 대한 사무국 보고서, 투명성제도 하의 전문가 보고서 등 다양한 절차 개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이러한 옵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하는 방법 그리고 CMA 요청에 의하여 개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른 당사자 또는 복수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개시를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79]
- 위원회 활동 결과물: 어떤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을 촉진하고 준수를 증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촉진 · 증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개도국은 이행준수 메커니즘의 목적이 당사국들의 이행준수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보 · 경험 · 교훈의 공유, 당사국이 직면한 문제의 확인, 활동계획 수립, 전문가 파견, 기술적 재정적 지원, 권고 등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위원회에 의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미준수 판정 등의 포함을 주장함.[80] 2018년 본 회의에서 일정한 통제 하의 위원회 재량에 따라 특정 사안에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다수의 결과물 가능하다는 것에 당사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됨.
- 위원회 조직: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 위원별 대체위원 임명 여부, 위원 임기(2년 또는 3년, 연임 가능 여부), 매년 교체할 위원(대체위원)의 수 (임기 2년의 경우 매년 6명 교체, 임기 3년의 경우 매년 4명 교체), 후임 위원 임명 시까지 위원자격 지속 여부, 위원의 사퇴 및 보충, 집행부 구성 여부 및 방법, 위원회 회합 빈도(연간 최소 1회 또는 2회 또는 연간 몇 회) 및 위원회 활동 개시 시기(2019년 또는 2020년), 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활동 및 의사결정 여부, 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이유 제시 여부, 위원의 이행 충돌 등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다양한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고 있음.[81]

79) *op.cit.* pp. 9-10.
80) *op.cit.* pp. 12-13.
81) *op.cit.* pp. 5-8.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V. 후속협상에 대한 전반적 전망

V. 후속협상에 대한 전반적 전망

- APA 협상회의는 2018년 말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비공식기록의 상반된 요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된 요소를 기초로 협상문안을 작성하고, 미합의 규정에 대한 타협과 최종문안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교토의정서가 협약 부속서 당사국에 대하여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장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정서 자체에 중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마라케시 합의가 23개의 총회 결정을 포함한 216 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량임을 고려할 때, 당사국들 모두가 – 비록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 감축 약속을 부담하고 지속가능한 항구적 체제라는 파리협정의 특성 상 그 이행지침은 마라케시 합의보다 방대한 분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진전이 상당한 우려를 초래할 정도임.
- 특히 2018년 5월 본 협상회의에서 협상의 기초가 되는 협상문 작성을 위하여 기존 당사국들의 입장을 문장형태로 서술하는 작업을 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이를 개시하지도 못한 상황으로 종료한 바, 2018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추가 회기 및 2018년 12월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제24차 COP 회기에 개최되는 마지막 회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임.
- 다만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에 있어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하에서 운영된 다양한 메커니즘과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기반으로 해야 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당사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상 속도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파리협정의 이행 · 준수 위원회의 운영 방식 및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교토의정서의 준수위원회 가운데 '이행원활화 분과'(facilitative branch) 운영 지침을 모델로 하면 상당한 쟁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2017년 협상회의 기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당사국들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지침을 2018년까지 채택한 후 잔여 지침을 추후 필요에 따라 마련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2018년 5월 협상회의에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이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바, 2018년까지 필수적 지침을 마련하고 잔여 지침을 파리협정 규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21년 직전인 2020년까지 마련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18년까지 채택할 필수적 지침의 범위에 대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본 회의 개시 이전부터 개도국들은 모든 의제에서 일관되고 균형 잡힌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이는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축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개도국이 중시하는 적응 분야의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로 보임.[82] 이러한 개도국의 우려로 인하여 2018년 본 협상회의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남은 협상

82) IISD, Summary of the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 April – 10 May 2018, Earth Negotiations Bulletin, p. 17 (13 May 2018).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개도국의 우려 해소, 즉 재정 및 적응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감축 등 다른 의제의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캔쿤 합의 도출, 더반 총회 결정, 파리협정 채택 등 중요한 순간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당사국의 노력이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83]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COP-24에서 PAWP 작업을 일단락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당사국의 존재가 절실한 형편임. 그런데 파리협정을 탈퇴할 의사를 밝힌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의 탈퇴 의사 표명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은 자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조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됨.[84] 이는 올 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후속협상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는 상황으로 사료됨.

83) *op.cit.* p. 19.

84) Meena Raman, Overview of outcomes at the 2017 climate talks, TWN Infor Service on Climate Change, Third World Network (23 January 2018), available at https://www.twn.my/title2/climate/info.service/2018/cc180102.htm.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www.klri.re.kr

참고 문헌

1. 단행본

Bodansky, Daniel, Jutta Brunne´e & Lavanya Rajamani,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Freestone, David & Charlotte Streck (ed), Legal Aspects of Implementing the Kyoto Protocol Mechanis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Klein, Daniel, Maria Pia Carazo, Meinhard Doelle, Jane Bulmer & Andrew Higham (ed),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alysis and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Yamin, Farhana & Joanna Depledge,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A Guide to Rule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 UNFCCC 문서

1)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

UNFCCC, Decision 1/CP.17,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eventeenth session, held in Durban from 28 November to 11 December 2011: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seventeenth session", FCCC/CP/2011/9/Add.1 (15 March 2012).

_____, Decision 2/CP.18,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eenth session, held in Doha from 26 November to 8 December 2012: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eighteenth session", FCCC/CP/2012/8/Add.1 (28 February 2013).

_____, Decision 1/CP.19,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nineteenth session, held in Warsaw from 11 to 23 November 2013: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nineteenth session", FCCC/CP/2013/10/Add.1 (31 January 2014).

_____, Decision 1/CP.20,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ieth session, held in Lima from 1 to 14 December 2014: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ieth session", FCCC/CP/2014/10/Add.1 (2 February 2015).

_____, Decision 1/CP.21,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first session, held in Paris from 30 November to 12 December 2015: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first session", FCCC/CP/2015/10/Add.1 (29 January 2016).

_____, Decision 1/CP.22,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second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7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second session", FCCC/CP/2016/10/Add.1 (31 January 2017).

_____, Decision 1/CP.23,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twenty-third session, held in Bonn from 6 to 18 November 2017: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t its twenty-third session", FCCC/CP/2017/11/Add.1 (8 February 2018).

2)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문서

UNFCCC,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n the first part of its first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15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one: Proceedings, FCCC/PA/CMA/2016/3 (31 January 2017).

_____, Decisions 1/CMA.1, in the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on the first part of its first session, held in Marrakech from 15 to 18 November 2016: Addendum Part Two: Action taken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FCCC/PA/CMA/2016/3/Add.1 (31 January 2017).

3) 후속협상 비공식기록

UNFCCC, APA agenda item 3 – Further guidance in relation to the mitigation section of decision 1/CP.21, on: • features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6, • information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8; and • accounting for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31,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 – final version (13 November 2017), available at https://unfccc.int/files/meetings/bonn nov 2017/in-session/application/pdf/apa 3 informal note final version.pdf

_____, APA agenda item 3 – Further guidance in relation to the mitigation section of decision 1/CP.21, on: • features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6, • information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28; and • accounting for Partie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s specified in paragraph 31,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 – Navigation tool to supplement the informal note of APA 1-4 by the co-facilitators (8 May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PA1-5 item3 Final%20Iteration 8May.pdf

_____, Draft elements for APA agenda item 5: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referred to in Article 13 of the Paris Agreement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final iteration (9 May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PA%20item%205 informal%20note final%20iteration 09052018%201514.pdf

_____, Draft elements for APA agenda item 6: Matters relating to the global stocktake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e Paris Agreement: a)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input for the global stocktake, b) Development of the modalities of the global stocktake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 – final iteration (8 May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Informal%20note Final Iteration 08052018 1300.pdf

_____, Draft elements of APA agenda item 7: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mittee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and promote compliance referred to in Article 15.2 of the Paris Agreement – Informal note by the co-facilitators-Final iteration, (8 May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PA%207 Informal%20Note 8May2018 final%20for%20posting.pdf

_____, APA agenda item 8: Further matter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formal Note by the Co-Chairs: Final Iteration (14 November 2017@16:30 hrs), available at http://unfccc.int/files/meetings/bonn nov 2017/in-session/application/pdf/apa 8 informal note .pdf.

_____, Reflections note on the forth part of the first session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Note by the Co-Chairs, APA.2018.1 Informal Note (10 April 2018), available 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APA%201.5%20Reflections%20Note%2C%20v4.0%20%2810%20Apr.2018%29 0.pdf

4) 부속기구 결론문

UNFCCC, Draft conclusions proposed by the Co-Chairs: Agenda items 3-8, FCCC/APA/2018/L.2 (10 May 2018)

3. 기타

Raman, Meena, Overview of outcomes at the 2017 climate talks, TWN Infor Service on Climate Change, Third World Network (23 January 2018), available at https://www.twn.my/title2/climate/info.service/2018/cc180102.htm.

Third World Network, Call for balanced and comparable progress on all elements of the Paris Work Programme, TWN Bonn News Update 2, 1 May 2018, available at https://twnetwork.org/sites/default/files/TWN_update2_6.pdf

_____, Parties express divergent views on 'features' of NDCs, TWN Bonn News Update 15, 17 May 2018, available at https://twnetwork.org/sites/default/files/TWN_update15_4.pdf

IISD, Summary of the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 April – 10 May 2018, Earth Negotiations Bulletin, 13 May 2018, available at http://enb.iisd.org/download/pdf/enb12726e.pdf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18년 6월 29일 / **발행인** 이익현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TEL (044) 861–0483 / **FAX** (044) 868–9919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